<bof>

1.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3 Special taxation on capital gains on sales of land and similar assets)[n]
   1. [1](#1 ==개요)(#2 ==개요)(#3 ==Overview)[n]
      1. {1}(#1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및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 법인이 보유한 투기 성격의 토지나 비슷한 성격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 In the case where a corporation sells land with speculative characteristics or similar types of houses, along with cooperative membership rights of apartment ownership or sales rights, additional taxes must be paid on the capital gains on sales of the real estate.){n}
   2.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추가 부과)(#3 Additional taxation on capital gains on sales of land)[n]
      1.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의미합니다.)(#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건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 The taxation on capital gains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such as land and buildings, to prevent corporate real estate speculation refers to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xes on the capital gains realized from selling such assets.){r1<n>,r4<n>}
   3. [3](#1 법인세 계산 구조)(#2 법인세 계산 구조)(#3 Corporate tax calculation structure)[n]
      1. [4](#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 $(Corporate tax on capital gains on sales of land))[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1. [7] (#1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2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3 When selling two or more pieces of land)[T,r2<n>]
       1. {1}(#1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2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3 =It is calculated by aggregating the capital gains from each asset that have been sold.){n}
       2. {2}(#1 =양도한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토지 등의 경우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법령§92의2⑨).)(#2 =양도한 자산 중 싸게 팔아 양도손실이 있는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3 =In the case of land that was sold at a lower price resulting in a loss, it is deducted from the capital gains when calculating the capital gains.){n}
       3. {3}(#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2 =싸게 팔아 양도손실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3 =The capital gains on sales of assets subject to the same tax rate as the capital gains on sales of assets that incurred a loss due to being sold at a lower price){n}
       4. {4}(#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2 =싸게 팔아 양도손실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3 =The capital gains on sales of assets subject to a different tax rate from the capital gains on sales of assets that incurred a loss due to being sold at a lower price){n}
  1. [9](#1 $(적용세율))(#2 $(적용세율))(#3 $(Applicable tax rate))[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1. [11]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대상)(#3 Taxable subject for capital gains on sale of land and similar assets)[n]
     1. [12](#1 ==주택)(#2 ==주택)(#3 ==Housing)[n]
        1. {1}(#1 법령§92의2②에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단, ｢지방자치법｣§3③ 및 ④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법령§92의10에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2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단, 농어촌 주택은 제외됩니다.)(#3 Buildings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residential, such as vacation homes, except for rural houses) {r14<n>,r15<n>}
     2. [14](#1 과세대상 확대(’21년 양도분부터 적용))(#2 세금 부과대상 확대(’21년 양도분부터 적용))(#3 Expansion of taxation subjects (applicable from sales in 2021))[n]
        1. {1}(#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2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3 Rights to acquire housing (rights of apartment ownership, sales rights)){e12<n>,r15<n>}
     3. [15](#1 법령§92의2②에서 정하는 주택)(#2 법에서 정하는 주택)(#3 Housing as defined by the law)[n]
        1. [16](#1 ==정의)(#2 ==정의)(#3 ==Definition)[n]
           1. {1}(#1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함)(#2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3 Housing located in South Korea that do not meet the following criteria){r12<n>,r14<n>}
        2. [16x1](#1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2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3 Private rental housing or public housing)[n]
           1. {1}(#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법령§92의 2②(1)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2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법령 제92조2②(1)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3 Private rental housing or public housing that meets all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2-2(2)(1) of the law.){ r12<n>,r14<n>}
        3. [16x3](#1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2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3 Private rental housing or public housing)[n]
           1. {1}(#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령 §92의2②(1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그 주택)(#3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leasing two or more houses that meet all the legal requirements as private rental housing or public housing, those houses.){ r12<n>,r14<n>}
        4. [16x4](#1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2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3 Private rental housing or public housing)[n]
           1.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 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 주택으로서 법령§92의2② (1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2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서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채 이상인 경우 그 주택)(#3 In the case of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owning five or more houses that meet all the legal requirements as private rental housing or public housing, those houses.){ r12<n>,r14<n>}
        5. [16x5](#1 미분양주택)(#2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n]
           1.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법령 §92의2 ②(1의4)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세금 신고 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3 Housing that meets all the legal requirements as private rental housing or public housing. In this case, the corporation selling the housing must submit a copy of the unsold housing confirmation certificate and the sales contract to the tax office when filing taxes for the year in which the sale of the housing takes place.){ r12<n>,r14<n>}
        6. [16x6](#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2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acquired by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etc.)[n]
           1. {1}(#1 법령§92의2②(1의5)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 부동산 투자회사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을 하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directly acquired by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until February 11, 2010.){ r12<n>,r14<n>}
        7. [16x7](#1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2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3 When acquired unsold housing according to a purchase agreement)[n]
           1. {1}(#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2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3 =Housing acquired as per a purchase agreement for unsold housing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within 3 years from the acquisition date.){ r12<n>,r14<n>}
        8. [16x8](#1 신탁업자가 취득한 미분양주택)(#2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자가 취득한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acquired by the entity managing the customer's asset)[n]
           1. {1}(#1 법령§92의2②(1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2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 하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acquired until February 11, 2010 based on contracts to manage customer assets){ r12<n>,r14<n>}
        9. [16x9](#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2 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quired by investment companies, etc)[n]
           1. {1}(#1 법령§92의2②(1의8)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2 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quired by investment companies, etc., until April 30, 2011){ r12<n>,r14<n>}
        10. [16x10](#1 신탁업자가 취득한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2 신탁업자가 취득한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quired by trust companies)[n]
            1. {1}(#1 법령§92의2②(1의9)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2 계약에 따라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자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 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located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irectly acquired by the entity managing the customer's asset based on contracts until April 30, 2011){ r12<n>,r14<n>}
        11. [16x11] (#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2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acquired by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n]
            1. {1}(#1 법령§92의2②(1의10)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2 부동산투자회사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directly acquired by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until December 31, 2014){ r12<n>,r14<n>}
        12. [16x12] (#1 신탁업자 취득하는 미분양주택)(#2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기로 하는 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acquired by asset managers for customers)[n]
            1. {1}(#1 법령§92의2②(1의11)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 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2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 관리자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3 Unsold housing directly acquired by the manager pursuant to an agreement to manage customer assets until December 31, 2012.){ r12<n>,r14<n>}
        13. [16x13]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3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or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n]
            1.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으로서 법령 §92의2②(1의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민간임대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3 Unsold housing directly acquired by the manager pursuant to an agreement to manage customer assets until December 31, 2012.){ r12<n>,r14<n>}
        14. [16x14]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3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or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n]
            1.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법령 §92의2②(1의1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민간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그 주택)(#3 Among private rental housings, if there are two or more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etc. meeting all the legal requirements, those houses.){ r12<n>,r14<n>}
        15. [16x15] (#1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2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3 Rental housing for which registration has been canceled through application for deregistration within the mandatory rental period)[n]
            1. {1}(#1 법령§92의2②1, 1의2, 1의4 및 1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 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2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3 Housing sold within 1 year after the registration is canceled when registration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is canceled for rental housing){ r12<n>,r14<n>}
        16. [16x16] (#1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2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3 Housing owned by a corporation provided free of charge, including residential homes and others)[n]
            1. {1}(#1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2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3 Housing provided to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are not shareholders, with a period of provision or free provision exceeding 10 yearsg){ r12<n>,r14<n>}
        17. [16x17](#1 저당권의 실행등으로 취득하는 주택)(#2 저당권의 실행등으로 취득하는 주택)(#3 Housing acquir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a mortgage)[n]
            1. {1}(#1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2 담보의 실행으로 받기로 한 돈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3 Housing acquired in lieu of money received through the execution of collateral, and which has not passed 3 years since the acquisition date){ r12<n>,r14<n>}
        18. [16x18](#1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3 Housing acquired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n]
            1. {1}(#1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법으로 정하는 주택)(#3 Housing held for other unavoidable reasons as defined by law){ r12<n>,r14<n>}
     4. [17](#1 비사업용 토지)(#2 비사업용 토지)(#3 Non-commercial land)[n]
        1. [18](#1 ==정의)(#2 ==정의)(#3 ==Definition)[n]
           1. {1}(#1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92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 단,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법령§92의11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2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단, 토지를 취득한 후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투기적 성격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3 It refers to land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during the period of land ownership. However, land that is prohibited from use under the law after acquisition or becomes a speculative property due to unavoidable reasons is excluded.) {r19<n>,r20<n>,r21<n>,r22<n>,r23<n>,r24<n>,r25<n>}
        2. [19](#1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3 Paddy fields and orchards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T,r18<n>]
           1. [19x1] (#1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2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가지고있는 토지)(#3 Land held by corporations that do not primarily engage in agriculture) [n]

{1}(#1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2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3 Land owned by corporations that do not primarily engage in agriculture){n}

* + - * 1. [19x2] (#1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2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3 Farmland located in urban areas )[n]

{1} (#1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3④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1)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 중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3 City areas designated by law among special cities, metropolitan autonomous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and cities){n}

* + - 1. [20](#1 임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법령§92의6 참조))(#2 임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3 Forest lan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s excluded)[T,r18<n>]
         1.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7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2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3 =Forest land necessary for public purposes, such as forest conservation areas or for the protection and cultivation of forests.){n}
         2. {2}(#1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2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임업 경영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3 =Forest land owned by corporations primarily engaged in forestry or corporations engaged in forestry management.){n}
         3. {3}(#1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2 =토지의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임야)(#3 =Forest land for which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 considering factors such as land ownership period and area.){n}
      2. [21](#1 목장용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 목장용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3 Ranch lan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T,r18<n>]
         1. [21x1](#1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2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3 Land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n]

{1}(#1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법령§92의7②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2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3 Ranch land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considering land ownership, location, usage, holding period, and area.){n}

* + - * 1. [21x2](#1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2 축산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3 Ranch land owned by corporations engaged in livestock farming.)[n]

{1}(#1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법령§92의7④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법령§92의7⑤에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 있는 목장용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2 축산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등에 있는 목장용지)(#3 Ranch land owned by corporations engaged in livestock farming that exceeds the standard area for livestock land or is located in metropolitan cities, etc.){n}

* + - * 1. [21x3](#1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2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3 Ranch land owned by corporations not primarily engaged in livestock farming.)[n]

{1}(#1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2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3 Ranch land owned by corporations not primarily engaged in livestock farming.){n}

* + - 1. [22](#1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을 제외한 토지)(#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을 제외한 토지)(#3 Land other than farmland, forest land, and ranch land, excluding the following types of land)[T,r18<n>]
         1. {1}(#1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3 =Land for which property tax is exempt or non-taxable.){n}
         2. {2}(#1 =지방세법§106①(2) 및 (3)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3 =Land subject to separate assessment or separate taxation for property tax purposes.){n}
         3. {3}(#1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령§92의 8①에서 정하는 것)(#2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토지)(#3 =Land for which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business, considering the land's usage.){n}
      2. [23](#1 주택 부수토지)(#2 주택 부수토지)(#3 Land attached to a house)[n]
         1. {1}(#1 지방세법§106②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법령§92의 9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 주택에 부속된 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3 Land attached to a house that exceeds the area specified by law beyond where the house is situated.){r18<n>,r25<n>}
      3. [24](#1 별장의 부속토지)(#2 별장의 부속 토지)(#3 Land attached to a villa)[n]
         1. {1}(#1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봄)(#2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3 In cases where the boundaries of land attached to a villa are unclear, land equivalent to ten times the floor area of the building shall be considered as attached land.){r18<n>,r25<n>}
      4. [25](#1 업무무관 토지)(#2 업무무관 토지)(#3 Land unrelated to business)[n]
         1. {1}(#1 그 밖에 위에서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 그 밖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토지)(#3 Land for which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r18<n>,r23<n>,r24<n>}
    1. [26](#1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3 Cooperative membership rights of apartment ownership and sales rights (applicable from sales after January 1, 2021))[n]
       1. [27](#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3 Cooperative membership rights of apartment ownership acquired due to the approval of a management disposal plan or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n]
          1.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3 Rights of apartment ownership acquired due to the approval of a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r27x1<n>,r27x2<n>}
       2. [27x1] (#1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3 Cooperative membership rights of apartment ownership acquired as a member of a redevelopment association)[n]
          1.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함)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2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다.)(#3 Limited to those acquired as members of redevelopment associations, including the associated land.){r27<n>,r27x2<n>}
       3. [27x2] (#1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분양권)(#2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분양권)(#3 Sales rights according to Income Tax Act Article 88.)[n]
          1. {1}(#1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2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받기로하는 분양권)(#3 Sales rights obtained through a supply contract for a house.){r27<n>,r27x1<n>}
  1. [28](#1 비과세 대상)(#2 비과세 대상)(#3 Non-taxable subjects)[n]
     1. [29](#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단, 미등기 토지등은 제외))(#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판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단,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과세대상입니다))(#3 No tax shall be levied on the following land for capital gains of sales of land. However, land not registered is subject to taxation)[T,r27<n>]
        1. {1}(#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파산선고에 의해 토지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3 =Income generated from the sale of land due to bankruptcy.){n}
        2. {2}(#1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법령§92의2③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농지의 교환이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 =Income generated from land exchanges or divisions of land previously directly cultivated by the corporation.){n}
        3.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법령§92의 2④에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2 =기존의 토지를 새 토지로 바꾸는 사유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3 =Income generated due to reasons defined by law, such as changing existing land into new land.){n}
     2. [30](#1 ==예규)(#2 ==예규)(#3 ==Established rule)[n]
        1. [3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과소하게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여부)(#3 Whether additional tax is imposed due to underreporting of capital gains for land sales, etc)[n]
           1. {1}(#1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의 사유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기준-2021- 법령해석 기본-0191, 2021.10.27.))(#2 법인이 세금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토지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잘못 계산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3 If a corporation miscalculates profit or loss generated from selling land, etc., when reported by the tax reporting deadline, it is subject to additional tax for underreporting.){ r2<n>,r9<n>}
        2. [32](#1 토지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2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후 잔여토지가 투기목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Whether remaining land after the state acquires ownership of land qualifies as speculative land)[n]
           1. {1}(#1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 법인-0091, 2017.8.10.))(#2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게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는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3 When a portion of land acquired for constructing a shopping mall, etc., is sold to the state as railway land, 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land cannot be used for the project, the sale is not considered speculative.){ r2<n>,r9<n>}
        3. [33](#1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2 한 회사를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에게 넘어가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3 Calculation method for the lease term of rental housing sold to a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through the division of a company and the distribution of shares of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to existing shareholders)[n]
           1.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제1호의2 나목의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1334, 2009.11.30.))(#2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분할되어 임대주택이 새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할 경우 기존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When assessing the requirement for a lease of five years or more, if a corporation is divided, and a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succeeds in continuing the housing lease business, the calculation includes existing lease period.){ r2<n>,r9<n>}
        4. [34](#1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2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비용을 차감해야하는지)(#3 Whether to deduct sales expenses when calculating capital gains from the sale of land or similar assets)[n]
           1. {1}(#1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035, 2009.9.23.))(#2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3 When calculating capital gains from the sale of land or similar assets, the expenses incurred while selling the land are not deducted from the sales amount.) {r2<n>,r9<n>}

<boe>